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764회 2023. 7. 7.(금)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쇄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4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5호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0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4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59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53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div style="text-align: right;">등급별</div> <div style="text-align: left;">근무연수별</div>	1 등 급	2 등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홍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품을 지원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제품 등 세부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	개최 시	매회 2만원 범위	방문자 또는 이벤트 참여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만원 범위)
체험단 운영	운영 시	매회 체험단 1인당 25만원 범위	체험단에 선정된 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5만원 범위)





##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

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의 수탁운영

6. 복지사각지대(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

7.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상임 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출연금
-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구의 출연금
-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 3.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교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

탁할 때에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재단은 구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예산의 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764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3.07.07.(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  
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난방비

## 4. 경로당 생활 물품

## 5. 경로당 시설물 개수·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 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 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놀이 권리 증진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 서구 아동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4조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  
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  
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

제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64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3.07.07.(금)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회의록비치)”를“(회의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

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위원 참석사항
- 3. 위원발언 요지
- 4. 심의사항 및 결과
-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중 “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위원”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으로,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10조 중 “거처 별도로”를 “거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64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3.07.07.(금)  
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 신청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

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대표자(기관명)	
대표자(기관) 주 소	
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참 여 인 원	(학년) 명
신 청 인 (인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명 :</li> <li>▪ 휴대폰번호:</li> <li>▪ 이메일주소:</li> </ul>
참여목적	
<p>「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단체(기관)장 (직인)</p> <p>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p>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